

제2025-109호 2025년 12월 29일(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4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41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4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43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묘도동 창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여수시 고시	제2025-545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군자동 동아일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여수시 고시	제2025-546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교동 중앙교회-다락 카페 소방도로 개설 1,2공구)
○ 여수시 고시	제2025-55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돌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5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5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5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5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59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60호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6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6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6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6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6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67호	장지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5-568호	유촌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792호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800호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 원상회복 공시송달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805호	도로지정 공고(신월동 188-12번지)
○ 여수시 공고	제2025-3812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 현대컨테이너(주)
○ 여수시 공고	제2025-3819호	지적제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 여수시 공고	제2025-3830호	2026년도 새기술 보급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상반기)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제2차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5-383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동북아 LNG Hub 터미널 송출주배관 건설공사)
○ 여수시 공고	제2025-384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읍·면·동

○ 한려동 공고	제2025-32호	한려동 3통장 공개모집 공고
----------	-----------	-----------------

규 칙

- | | | |
|----------|-------|-----------------------------|
| ○ 여수시 규칙 | 제873호 |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여수시 규칙 | 제874호 |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여수시 규칙 | 제875호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조 례

- | | | |
|----------|--------|--------------------------------------|
| ○ 여수시 조례 | 제2275호 | 여수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
| ○ 여수시 조례 | 제2276호 |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 ○ 여수시 조례 | 제2277호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5. 12. 26.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울촌면 조화리 125-8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25, 소로1-413, 소로1-414, 소로1-415)사업

나. 명 칭: 울촌면 동양엔파트아파트~울촌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면 적: 772㎡

나. 규 모

구 분	금회 시행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	
계	-	264	772	변경
중로 3-25	2	12.5	34	변경
소로 1-413	2	100	25	변경
소로 1-414	2	139	282	변경
소로 1-415	2	12.5	205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여수시장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기간(변경): ▮ 변경 2023. 7.13. ~ 2025.12.31.

└ 변경 2023. 7.13.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56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조서

(중로3-25)

번 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	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1	여수	조화	170-16	답	67	34	조여원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9	기정
1	여수	조화	170-16	도	67	34	여수시	-	변경
합 계					67	34			
합 계					67	34			

(소로1-413)

번 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	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1	여수	조화	170-16	답	67	26	조여원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9	기정
1	여수	조화	170-16	도	67	26	여수시	-	변경
2	여수	조화	173-3	대	31	31	박재웅	서울 관악구 신림동 127, 29-302호	기정
2	여수	조화	173-3	도	31	31	여수시	-	변경
3	여수	조화	174-3	답	38	38	여수시	-	기정
3	여수	조화	174-3	도	38	38	여수시	-	변경
4	여수	조화	175-9	답	25	25	여수시	-	기정
4	여수	조화	175-9	도	25	25	여수시	-	변경
5	여수	조화	175-10	대	1	1	유인길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75-2	기정
5	여수	조화	175-10	도	1	1	여수시	-	변경
6	여수	조화	175-11	답	41	41	박부영	순천시 원가곡길 75, 104-301호	기정
6	여수	조화	175-11	도	41	41	여수시	-	변경
7	여수	조화	144-12	전	15	15	여수시	-	기정
7	여수	조화	144-12	도	15	15	여수시		변경
8	여수	조화	126-3	답	48	48	김원태 외 1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91, 06-602호	기정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	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8	여수	조화	126-3	도	48	48	여수시	-	변경
9	여수	조화	127-6	답	26	26	이정숙	대구 수성구 공경로 70, 102-1303호	기정
9	여수	조화	127-6	도	26	26	여수시	-	변경
합 계					292	251			기정
합 계					292	251			변경

(소로1-414)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	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1	여수	조화	131-20	답	31	31	임기업	경남 김해시 우암로 106, 307동 1303호	기정
1	여수	조화	131-20	도	31	31	여수시	-	변경
2	여수	조화	130-3	답	17	17	김성현	전남 여수시 덕양로 157, 314동 305호	기정
2	여수	조화	130-3	도	17	17	여수시	-	변경
3	여수	조화	131-18	답	24	24	여수시	-	기정
3	여수	조화	131-18	도	24	24	여수시	-	변경
4	여수	조화	122-14	전	37	37	제이앤시티주식회사	광주 북구 우치로 227, 3층	기정
4	여수	조화	122-14	도	37	37	여수시	-	변경
5	여수	조화	122-15	전	103	103	여수시	-	기정
5	여수	조화	122-15	도	103	103	여수시	-	변경
6	여수	조화	125-8	도	2,438	70	여수시	-	기정
6	여수	조화	125-8	도	2,438	70	여수시	-	변경
합 계					2,650	282			기정
합 계					2,650	282			변경

(소로1-415)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	리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1	여수	조화	193-11	답	4	4	여수시	-	기정
1	여수	조화	193-11	도	4	4	여수시	-	변경
2	여수	조화	201-25	도	1,088	1	여수시	-	변경 없음
2	여수	조화	201-25	도	1,088	1	여수시	-	
3	여수	조화	193-12	답	39	39	여수시	-	기정
3	여수	조화	193-12	도	39	39	여수시	-	변경
4	여수	조화	165-14	답	33	33	여수시	-	기정
4	여수	조화	165-14	도	33	33	여수시	-	변경
5	여수	조화	182-6	학	23	23	여수시	-	기정
5	여수	조화	182-6	도	23	23	여수시	-	변경
6	여수	조화	165-13	답	17	17	서홍심	전남 여수시 율촌면 동산개길 40	기정
6	여수	조화	165-13	도	17	17	여수시	-	변경
7	여수	조화	165-15	답	35	35	서홍심	전남 여수시 율촌면 동산개길 40	기정
7	여수	조화	165-15	도	35	35	여수시	-	변경
8	여수	조화	166-5	답	13	13	여수시	-	기정
8	여수	조화	166-5	도	13	13	여수시	-	변경
9	여수	조화	862-6	도	81	4	국	-	변경 없음
9	여수	조화	862-6	도	81	4	국	-	
10	여수	조화	167-1	답	29	29	조주현	여수시 조화리 79	기정
10	여수	조화	167-1	도	29	29	여수시	-	변경
11	여수	조화	170-16	답	67	7	조여원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9	기정
11	여수	조화	170-16	도	67	7	여수시	-	변경
합 계					1,429	205			기정
합 계					1,429	205			변경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5. 12. 26.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웅천동 186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공원: 웅천공원)사업
 - 나. 명 칭: 여수시립박물관 접근로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846.35㎡
 - 나. 규 모: L=422.2m, B=2.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기간(변경): ㄱ 변경 2025. 2.27. ~ 2025.12.31.
ㄴ 변경 2025. 2.27. ~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문화유산과(☎061-659-4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실제 이용	소 유 자		비고
	시	읍·면	리·동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여수		웅천	1865-1	공	366,093	846.35	공원	여수시		
계				1필지		366,093	846.35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합니다.

2025. 12. 26.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오천동 341-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218)사업
 - 나. 명 칭: 오천동 몽돌해변 진입부 도로확장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676m²
 - 나. 규 모: L=110m B=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24. 1. 4.~2025.12.31.
└변경: 2024. 1. 4.~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번 호	토지소재지		지 목	총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합 계				4,192	676.0						
1	오천	341-10	답	56	1.6	조영태	순천시 조례동 1658 주공아파트 702-804				
2	오천	341-9	도	176	141.9	여수시	시유지				
3	오천	341-8	도	50	34.7	주성두	여수시 오천동 3길 3	여수농협협동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355(문수동)	근저당권	
4	오천	341-6	대	160	2.3	주성두	여수시 오천동 3길 3	여수농협협동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355(문수동)	근저당권	
5	오천	341-11	도	2	2	여수시	시유지				
6	오천	344-7	도	18	8.1	여수시	시유지				
7	오천	345-4	도	159	79.3	윤홍열	순천시 용당동 191-1 현대아파트 101동 403호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주식회사정리 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부산지사)	가압류	
								순천시		압류	
8	오천	345-6	답	309	74.9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성회	서울 종로구 평동 222	여수농협협동 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355(문수동)	근저당권	
9	오천	345-2	도	56	11.5	윤홍열	순천시 용당동 191-1 현대아파트 101동 403호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주식회사정리 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부산지사)	가압류	
								순천시		압류	
10	오천	345-1	답	10	0.2	윤홍열	순천시 용당동 191-1 현대아파트 101동 403호	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주식회사정리 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 33	가압류	
								한국주택금융 공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부산지사)	가압류	
								순천시		압류	
11	오천	346-1	전	3	0.6	권수봉	여수시 오천동 369				
						서양기	여수시 오천동 351-2				
12	오천	346-2	도	36	36	권수봉	여수시 오천동 369				
						서양기	여수시 오천동 351-2				
13	오천	351-2	대	365	1.6	김복심	여수시 오천동 351-2				
14	오천	346-4	도	63	52.5	권수봉	여수시 오천동 369				
						서양기	여수시 오천동 351-2				
15	오천	351-3	도	17	17	여수시	시유지				
16	오천	351-4	도	5	5	서양기	여수시 오천동 351-2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총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7	오천	347-6	도	4	0.8	김흥기	여수시 오천동 371-3				
						김종옥	여수시 오천동 367				
						김용근	경기도 남성시 수정구 수진동 1468				
18	오천	350-2	도	36	36	여수시	국유지				
19	오천	350-1	답	1,763	11.4	김수동	부산시 서구 부민동 3가 부민이편한세상 101-1108				
20	오천	347-8	전	530	0.5	김용철	여수시 오천3길 10	여수제일신용 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로 134(선원동)	근저당권 지상권	
21	오천	347-2	도	56	29.8	여수시	시유지				
22	오천	350-7	도	154	113.4	여수시	시유지				
23	오천	347-1	전	10	10	여수시	시유지				
24	오천	350-3	답	147	4.7	여수시	시유지				
25	오천	349-1	도	7	0.2	여수시	시유지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26.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묘도동 1446-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묘도동 창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사업규모(변경없음)

규 모				기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총연장	금회시행				
소로	1	354	10	국지 도로	1,454	576	묘도동 1052-2	묘도동 1445-6	일반도로	
소로	1	356	10	국지 도로	635	635	묘도동 1051-5	묘도동 1229	일반도로	

나. 사업면적(변경없음): 28,517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정: 2013.12.19.~2025.12.31.

└변경: 2013.12.19.~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 061-659-4014), 도로과(☎061-659-407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연 번	소재지		지 목	지적 (㎡)	편입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주 소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합계				53,423	28,517						
1	묘도	1446-4	전	297	297.0		여수시				
2	묘도	1446-3	도	61	61.0		여수시				
3	묘도	1446-2	도	46	46.0		여수시				
4	묘도	1979	도	4,038	226.0		건설부				
5	묘도	1447	묘	40	40.0		여수시				
6	묘도	1448-5	도	24	24.0		여수시				
7	묘도	1448-2	도	53	53.0		여수시				
8	묘도	1448-8	대	505	505.0		여수시				
9	묘도	1448-7	대	70	70.0		여수시				
10	묘도	1448-3	도	76	76.0		여수시				
11	묘도	1380-5	도	7	7.0		여수시				
12	묘도	1448-9	대	68	68.0		여수시				
13	묘도	1380-8	답	32	32.0		여수시				
14	묘도	1380-9	대	29	29.0		여수시				
15	묘도	1451-4	대	65	65.0		여수시				
16	묘도	1451-5	대	214	214.0		여수시				
17	묘도	1451-2	도	83	83.0	여천군 삼일면 묘도리 1347	김성기				
18	묘도	910-5	학	24	24.0		여수시				
19	묘도	910-6	학	501	501.0		여수시				
20	묘도	1452-7	대	159	159.0		여수시				
21	묘도	1452-3	도	10	10.0	여천군 삼일읍 묘도리 1450	허봉순				
22	묘도	1452-4	도	7	7.0	여천군 삼일읍 묘도리 1450	허봉순				
23	묘도	911-3	도	6	6.0		여수시				
24	묘도	912-3	도	36	36.0	여천시 묘도동 1011	김동원	여천시 묘도동 1080	김준문	공유자	
25	묘도	912-7	도	46	46.0		여수시				
26	묘도	912-10	대	48	48.0		여수시				
27	묘도	912-5	도	2	2.0	여수시 묘도동 909-5	설정희	순천시 연향동 1378 현대아파트 105-1310	이재일	가압류	
28	묘도	911-2	도	148	148.0		여수시				
29	묘도	912-6	도	3	3.0	여수시 묘도동 909-5	설정희	순천시 연향동 1378 현대아파트 105-1310	이재일	가압류	
30	묘도	912-11	대	91	91.0	여수시 묘도동 909-5	설정희	순천시 연향동 1378 현대아파트 105-1310	이재일	가압류	
31	묘도	984-1	대	60	60.0		여수시				
32	묘도	915-2	도	33	33.0	여천군 삼일면 묘도리 1020	김익삼				
33	묘도	983-2	도	33	33.0	여천군 삼일읍 묘도리 1025	김희준				
34	묘도	983-3	도	92	92.0		여수시				

연 번	소재지		지 목	지적 (㎡)	편입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주 소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35	묘도	982-1	대	1,078	118.0		여수시				
36	묘도	982-10	도	225	42.0		여수시				
37	묘도	983-4	도	130	130.0	여천시 묘도동 1025	김중근				
38	묘도	980-3	도	61	61.0		여수시				
39	묘도	917-4	답	193	193.0		여수시				
40	묘도	980-2	도	13	13.0		여수시				
41	묘도	980-5	답	182	182.0		여수시				
42	묘도	1982	도	451	124.0		건설부				
43	묘도	918-3	답	59	59.0		여수시				
44	묘도	976-2	도	3	3.0		여수시				
45	묘도	919-2	도	99	99.0	여수시 삼일동 1011	김동원				
46	묘도	1985	구	1,683	230.0		건설부				
47	묘도	918-2	도	13	13.0		여수시				
48	묘도	976-3	도	81	81.0		여수시				
49	묘도	917-2	도	69	69.0		여수시				
50	묘도	976-4	답	131	131.0		여수시				
51	묘도	975-1	도	15	15.0		여수시				
52	묘도	975	답	170	170.0		여수시				
53	묘도	955-4	답	251	251.0		여수시				
54	묘도	974-1	답	35	35.0		여수시				
55	묘도	956-1	답	458	458.0		여수시				
56	묘도	957-1	답	468	468.0		여수시				
57	묘도	958-1	답	388	388.0		여수시				
58	묘도	1962	구	11,356	572.0		건설부				
59	묘도	960-1	답	496	496.0		여수시				
60	묘도	1967	도	645	224.0		건설부				
61	묘도	952-2	답	655	655.0		여수시				
62	묘도	961-1	답	580	580.0		여수시				
63	묘도	962	답	1,091	1091.0		여수시				
64	묘도	963-1	답	71	71.0		여수시				
65	묘도	1048-3	답	55	55.0		여수시				
66	묘도	1048-4	답	285	285.0		여수시				
67	묘도	1048-2	답	68	18.0		여수시				
68	묘도	1053-2	답	98	98.0		여수시				
69	묘도	1962-1	구	2,124	969.0		건설부				
70	묘도	1967-1	도	2,804	937.0		건설부				
71	묘도	1051-5	대	146	146.0		여수시				
72	묘도	1051-4	대	112	112.0		여수시				
73	묘도	1967-2	도	120	120.0		건설부				
74	묘도	1051-3	대	226	226.0		여수시				
75	묘도	1053-1	답	56	56.0		여수시				
76	묘도	1966-1	도	196	151.0		건설부				
77	묘도	공유수면	미		1880.0						
78	묘도	1054-2	답	44	23.0		여수시				
79	묘도	1054-3	답	764	764.0		여수시				
80	묘도	1055	도	326	216.0		여수시				
81	묘도	1055-1	답	76	76.0		여수시				
82	묘도	1043-2	답	23	23.0		여수시				
83	묘도	1043-1	도	10	10.0		여수시				
84	묘도	1058-2	답	120	120.0		여수시				
85	묘도	1038-4	대	45	45.0		여수시				
86	묘도	1963	도	3,306	239.0		건설부				

연 번	소재지		지 목	지적 (㎡)	편입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주 소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87	묘도	1037-6	도	54	54.0		여수시				
88	묘도	1037-1	도	7	7.0		여수시				
89	묘도	1037-7	답	113	113.0		여수시				
90	묘도	1061-4	답	67	67.0		여수시				
91	묘도	1061-1	도	3	3.0		여수시				
92	묘도	1091-1	도	30	12.0		여수시				
93	묘도	1091-4	대	186	186.0		여수시				
94	묘도	1092-4	대	5	5.0	여수시 묘도동 1033	김삼관				
95	묘도	1091-3	대	200	200.0		여수시				
96	묘도	1096-2	대	52	52.0		여수시				
97	묘도	1090-5	대	50	50.0		여수시				
98	묘도	1096-1	대	170	170.0		여수시				
99	묘도	1102-1	답	21	21.0		여수시				
100	묘도	1100-1	답	27	27.0		여수시				
101	묘도	1097-1	전	528	528.0		여수시				
102	묘도	1099-2	전	447	447.0		여수시				
103	묘도	1099-3	전	84	84.0		여수시				
104	묘도	1098-1	전	410	410.0		여수시				
105	묘도	1136-1	대	57	57.0		여수시				
106	묘도	1964	도	831	620.0		건설부				
107	묘도	1095-46	임	102	102.0		여수시				
108	묘도	1095-40	임	58	58.0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82번길 37, 1002호(신정동)	김명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63 까치마을 415-402	장성영	공유자	
109	묘도	1137-1	답	413	413.0		여수시				
110	묘도	1095-41	임	144	144.0		여수시				
111	묘도	1095-42	임	114	114.0		여수시				
112	묘도	1139-1	답	87	87.0		여수시				
113	묘도	1095-43	임	108	108.0		여수시				
114	묘도	1140-1	답	514	514.0		여수시				
115	묘도	1141-1	임	137	137.0		여수시				
116	묘도	1141-2	임	118	118.0		여수시				
117	묘도	1142-1	답	70	70.0		여수시				
118	묘도	1143-1	답	128	128.0		여수시				
119	묘도	1156-18	임	2,340	2340.0		여수시				
120	묘도	1144-1	전	163	163.0		여수시				
121	묘도	1145-1	전	351	351.0		여수시				
122	묘도	1154-1	전	206	206.0		여수시				
123	묘도	1155	전	721	721.0		여수시				
124	묘도	1220-1	전	399	399.0		여수시				
125	묘도	1156-4	전	803	803.0		여수시				
126	묘도	1156-19	임	89	89.0		여수시				
127	묘도	1221-3	전	292	292.0		여수시				
128	묘도	1219-3	전	200	200.0		여수시				
129	묘도	1964-1	도	142	42.0		건설부				
130	묘도	1219-1	전	20	20.0		전라남도				
131	묘도	1221-2	전	9	9.0		전라남도				
132	묘도	1212	임	43	2.0		전라남도				
133	묘도	1228	전	165	1.0		전라남도				
134	묘도	1228-1	전	1,729	115.0		전라남도				
135	묘도	1229	전	109	81.0		전라남도				
136	묘도	1212-1	임	618	263.0		전라남도				

연 번	소재지		지 목	지적 (㎡)	편입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주 소		주 소	성 명	권리관계	
137	묘도	1052-1	대	94	94.0		여수시				
138	묘도	1052-2	대	264	264.0		여수시				
139	묘도	1052-4	도	14	14.0		여수시				
140	묘도	842-7	대	118	118.0		여수시				
141	묘도	919-3	도	17	17.0	여수시 묘도동 1011	김정길				
142	묘도	919-4	도	12	12.0	여수시 묘도동 1011	김정길				
143	묘도	949-6	대	9	9.0	여수시 묘도1길 25-10	강숙자	여수시 묘도1길 25-10	김종모	공유자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26.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군자동 284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군자동 동아일보 옆 소로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가. 사업규모

규모			연장(m)			폭(m)	면적(㎡)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총연장	기시공	금회시공				
소로	3	29	60.0	-	60.0	6.0	356	796	
소로	2	467	823.0	-	44.0	8.0	440		

나. 사업면적 : 79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여수시장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7. 6. 8.~2025.12.31.**

└변경: 2017. 6. 8.~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도로과(☎061-659-4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소계				1,017	796						
1	군자동	284	도로	84	8	여수시					
2	군자동	283-2	대지	24	24	여수시					
3	군자동	280-1	대지	48	48	여수시					
4	군자동	290-1	구거	6	6	여수시					
5	군자동	133-5	대지	1	1	여수시					
6	군자동	296-17	도로	330	330	여수시					
7	군자동	296-19	도로	264	264	국토교통부					
8	군자동	130-1	대지	66	6	여수시					
9	군자동	128-1	대지	12	12	여수시					
10	군자동	126-1	대지	50	50	여수시					
11	군자동	123-1	대지	16	16	여수시					
12	군자동	122-1	대지	29	29	여수시					
13	군자동	304	도로	87	2	여수시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합니다.

2025. 12. 26.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서교동 717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87, 소로 2-475)사업
 - 나. 명 칭: 서교동 중앙교회~다락카페 소방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표기오류 정정)
 - 가. 면 적(변경) : 기정 1,747㎡(1공구 733, 2공구 1,020) → 변경 1,753㎡(1공구 733, 2공구 1,020)
 - 나. 규 모(변경없음): L=190m, B=6~8m(1공구 L=92m, B=6m, 2공구 L=98m, B=8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기정: 2019.10.22.~2025.12.31.
변경: 2019.10.22.~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4) 및 도로과(☎061-659-457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1공구 (변경)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 읍면동			토지 대장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관리 관계	
1	여수시 서교동	782-2	도	14	14	공	여수시				변경없음
2	"	782-3	도	3	3	공	여수시				변경없음
3	"	712	도	23	23	공	여수시				변경없음
4	"	712-1	도	44	44	국	국토교통부				당초
		712-1	도	44	44	국	기획재정부				변경
5		712-3	도	31	31	공	여수시				변경없음
6	"	717-2	대	1	1	공	여수시				변경없음
7	"	718-1	대	62	62	공	여수시				변경없음
8	"	725-1	대	61	61	공	여수시				변경없음
9	"	726-1	대	55	55	공	여수시				변경없음
10	"	735-1	대	58	58	공	여수시				변경없음
11	"	736-1	대	74	74	공	여수시				변경없음
12	"	737-1	대	44	44	공	여수시				변경없음
13	"	738-19	대	1	1	공	여수시				변경없음
14	"	738-18	대	17	17	공	여수시				변경없음
15	"	738-17	대	7	7	공	여수시				변경없음
16	"	738-16	대	36	36	공	여수시				변경없음
17	"	738-15	대	33	33	공	여수시				변경없음
18	"	738-14	대	35	35	공	여수시				변경없음
19	"	637-14	대	1	1	공	여수시				변경없음
20	"	637-13	대	133	133	공	여수시				변경없음
계				733	733						변경없음

○ 토지조서-2공구 (변경없음)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시군읍면동			토지 대장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여수시 서교동	748-1	대	5	5	공	여수시				변경없음
2	"	749-1	도	92	92	공	여수시				변경없음
3	"	766	대	26	26	공	여수시				변경없음
4	"	765-3	대	13	13	공	여수시				변경없음
5	"	767-3	대	33	33	공	여수시				변경없음
6	"	765-2	대	7	7	공	여수시				변경없음
7	"	765-1	대	33	33	공	여수시				변경없음
8	"	755-1	대	123	123	공	여수시				변경없음
9	"	752-1	대	41	41	공	여수시				변경없음
10	"	753	대	26	26	공	여수시				변경없음
11	"	747-1	차	12	12	공	여수시				변경없음
12	"	750-1	도	14	14	공	여수시				변경없음
13	"	751-1	도	17	17	공	여수시				변경없음
14	"	909	도	10	10	공	여수시				변경없음
15	"	918-1	도	14	14	공	여수시				변경없음
16	"	908-1	대	4	4	공	여수시				변경없음
17	"	931	대	2	2	공	여수시				변경없음
18	"	931-1	대	54	54	공	여수시				변경없음
19	"	932	대	1	1	공	여수시				변경없음
20	"	932-1	대	68	68	공	여수시				변경없음
21	"	932-2	대	10	10	공	여수시				변경없음
22	"	933-1	대	47	47	공	여수시				변경없음
23	"	933-2	대	10	10	공	여수시				변경없음
24	"	934-1	대	100	100	공	여수시				변경없음
25	"	934-2	대	20	20	공	여수시				변경없음
26	"	919-1	도	217	217	공	여수시				변경없음
27	"	919-2	도	21	21	공	여수시				변경없음
합 계				1,020	1,020						변경없음

○ 지장물조서(변경없음) - 철거 및 이설완료

여수 도시계획시설(돌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돌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25. 12. 24.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계획시설(돌산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붙임
2. 여수 도시계획시설(돌산공원) 조성계획 결정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5 - 55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5-33 (2025. 11. 11.)	2025. 12. 24.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실시계획 승인일	‘27.12.31.	여수시 남면 우학리 산168-3번지 일원	남면 학동항 방파제 보강공사

2025. 12. 24.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 - 55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5-42 (2025. 12. 11.)	2025. 12. 24.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실시계획 승인일	'27.12.31.	여수시 남면 유송리 139-13번지 일원	남면 나발마을 소형선부두 설치공사

2025. 12. 24.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 - 55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5-25 (2025. 10. 14.)	2025. 12. 24.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실시계획 승인일	'26.10.31.	여수시 남면 황간리 364-1번지 일원	남면 대항간도 소형선부두 확장공사

2025. 12. 24.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 - 55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5-22 (2025. 9. 22)	2025. 12. 26.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실시계획 승인일	'27.12.31.	여수시 남면 두리리 68-1번지 일원	남면 나발항 방파제 연장공사

2025. 12. 26.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 - 55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5-30 (2025. 11. 11.)	2025. 12. 26.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실시계획 승인일	‘27.12.31.	여수시 남면 두모리 1436-13번지 일원	남면 두포마을 연안시설 보수공사

2025. 12. 26.

여 수 시 장

여수시 고시 제2025 - 55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5-23 (2025. 9. 22)	2025. 12. 26.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실시계획 승인일	'26.12.31.	여수시 남면 두리리 165-1번지 일원	남면 봉통 소형선부두 정비공사

2025. 12. 26.

여 수 시 장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26.

여 수 시 장 (인)

1.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부여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 ~ 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3.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조서

영우구분	종전주소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폐지)일	적용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대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동 1789-4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길 13(돌산동)	2025.1226	건축물 신축	2025.0113	지역 및 위치에측정할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 252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2길 6(오천동)	2025.1226	건축물 신축	2025.0113	지역 및 위치에측정할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2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삼학동길 228-13	2025.1226	건축물 신축	2025.0113	지역 및 위치에측정할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문석동 380-13	전라남도 여수시 문석길 36(문석동)	2025.1226	건축물 신축	2025.0113	지역 및 위치에측정할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동 583-2	전라남도 여수시 덕영로 145(화양동)	2025.1226	건축물 신축	2025.0113	지역 및 위치에측정할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영리 산 75-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무선로 479-21	2025.1226	건축물 신축	2025.0113	지역 및 위치에측정할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75-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삼학동길 62	2025.1226	건축물 신축	2025.0113	지역 및 위치에측정할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384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산천길 25	2025.1226	건축물 신축	2025.0113	지역 및 위치에측정할 고려	
건물번호변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동 1588-2-4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284-1	2025.1226	건물군 분할 후 도로명주소 변경	2025.0113	지역 및 위치에측정할 고려	

202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여수시장

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항목(130,978종)

구분	결정항목	구분	결정항목
차량	105,801종	시설물	2,636종
기계장비	13,310종	입목	97종
선박	140종	어업권	238종
항공기	251종	회원권	4,211종
시설	4,063종	지하자원	231종

2. 세부 결정사항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한 가액으로, 2026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여수시 누리집(정보공개→시가표준액) 게시물 참조

3. 기 타

-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60 (2024. 10. 10.)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남면 유송리 415-11번지 일원	531㎡	2025. 12. 26.	남면 여천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2025. 12. 26.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61 (2024. 10. 10.)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남면 심장리 143-4번지 일원	459㎡	2025. 12. 26.	남면 장지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2025. 12. 26.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62 (2024. 10. 10.)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남면 횡간리 348-7번지 일원	664㎡	2025. 12. 26.	남면 횡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2025. 12. 26.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5-1 (2025. 1. 21.)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돌산읍 우두리 666-6번지 일원	1,642.53㎡	2025. 12. 26.	돌산읍 세구지향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2025. 12. 26.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63 (2024. 10. 10.)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삼산면 서도리 827-9번지 일원	757㎡	2025. 12. 26.	삼산면 서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2025. 12. 26.

여 수 시 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 합니다.

점용·사용 (승인)번호 (허가(승인)일)	준공검사 신청자		점용·사용장소	허가면적	준공검사 확 인 증 교부일자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24-69 (2024. 10. 10.)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화정면 제도리 54-8번지 일원	1,525㎡	2025. 12. 26.	화정면 제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공사

2025. 12. 26.

여 수 시 장

장지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지항 어촌뉴딜300사업(2021)’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장지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목적
어업인 작업 편의 및 조업 안전을 위한 계류 및 기능편익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마을정주여건 개선,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다각화로 모두가 잘살고 머물고 싶은 장지항(마을) 조성
3. 사업위치: 여수시 남면 심장리 일원(장지항)
4. 사업기간: 당초 2021년 ~ 2024년
변경 2021년 ~ 2025년
5. 사 업 비: 13,307백만 원(국비 9,315, 지방비 3,993)

6. 사업내용

구분	시행계획(당초) (2024.10.04)	시행계획(변경) (2025.12.26)	비고
공통 사업	- 방파제 확장 - 안전시설 설치(구항) - 부잔교설치(사업제외) - 물양장 포장 정비 - 공동작업장 조성 - 인양기 설치 - 어항준설	- 부잔교설치 (사업추가)	
특화 사업	- 커뮤니티센터 조성 - 노인회관 리모델링 - 주민휴게쉼터 조성 - 범죄예방 컨설팅 - 마을산책로 조성 - 장지공유센터 조성 - 장지바다 프롬나드 조성 - 여객대합실 신축	-	
S/W 사업	- 역량강화 - 지역협약체 운영 등	-	
기타	- 위탁비(수수료) - 설계비 등	-	

※ 세부내역 : 불임 참조

7.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위탁시행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8. 기타사항

- 관련 서류는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061-659-2287)와 한국어촌어항공단(☎ 070-8896-7726)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시행계획 세부내역

구분	시행계획 사업량					사업비		증△감		변경 사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사업량	사업비	
① 공통사업	어항시설 정비	안전시설	안전시설 설치(구항)	차막이, 돌망태삽터, 바닥조명, 계선주 등 1식	차막이, 돌망태삽터, 바닥조명, 계선주 등 1식	159	159	-	-	
		계류시설	부잔교 설치	-	신설 1개소	-	200	신설 1개소	200	주민의견수렴하여 추가시행 (기본계획 당시 포함 사업)
			물양장 포장 정비	A=1,500㎡	A=1,500㎡	132	132	-	-	
		기능 편익시설	공동작업장 조성	1개소 A=100㎡ 화장실 신설 1개소	1개소 A=100㎡ 화장실 신설 1개소	631	631	-	-	
		기타 어항시설	인양기 설치	20ton 1기, 기존크레인 이설 1식	20ton 1기, 기존크레인 이설 1식	363	363	-	-	
	① 소계					1285	1485			
② 특화사업	정주개선	문화·복지	장지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1개소 2층 (A=502.32㎡)	1개소 2층 (A=502.32㎡)	1,349	1,349	-	-	
			장지 노인회관 리모델링	내부 및 외관(A=60㎡)	내부 및 외관(A=60㎡)	188	188	-	-	
			주민휴게쉼터 조성	쉼터, 안전난간 등 1식	쉼터, 안전난간 등 1식	266	266	-	-	
		주거개선	범죄예방 컨설팅	1식	1식	600	400	1식	△200	당초 기본 및 시행계획시 예산 과다편성으로 잔액 발생분 및 전망대 위치이동에 따른 경관조명 삭제(58EA)
	관광진흥	관광레저	마을산책로 조성	1식	1식	1,585	1,585	-	-	
			장지공유센터 (누구나 다) 조성	리모델링 공사 등 1식	리모델링 공사 등 1식	1,314	1,314	-	-	
		경관개선	장지바다 프롭나드 조성	포장, 경관개선 등 1식	포장, 경관개선 등 1식	518	518	-	-	
	기항지 개선	여객편의시 설	여객대합실 신축	1개소 A=100.44㎡	1개소 A=100.44㎡	326 <11>	326 <11>	-	-	
	② 소계					6146 <11>	5946 <11>			

③ S W 사 업	역량강화		교육	1식	1식	220	220	-	-	
			홍보 마케팅	1식	1식	70	70	-	-	
			컨설팅	1식	1식	240	240	-	-	
	고용창출		사무장 운영	1식	1식	50	50	-	-	
	지역협의체		운영비	1식	1식	50	50	-	-	
	③ 소계					630	630			
④ 사 업 지 원	위탁비		수수료	1식	1식	1,028	1,028	-	-	
	설계비	마스터 플랜 및 기본계획 수립		1식	1식	416	416	-	-	
		실시설계(항만분야)		1식	1식	422	422	-	-	
		실시설계 (건축 및 조경분야)		1식	1식	478	478	-	-	
		디자인관리체계 운영비		1식	1식	64	64	-	-	
		공모운영비		1식	1식	22	22	-	-	
		설계도서검토비		1식	1식	11	11	-	-	
	④ 소계					2441	2441			
합계(①+②+③+④)					10,502 <11>	10,502 <11>				

여수시 유촌항 어촌뉴딜300사업 시행계획(변경) 수립 고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촌항 어촌뉴딜300사업(2021)’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유촌항 어촌뉴딜300사업
2. 사업목적
유촌, 죽촌마을은 적절한 수심과 좋은 수중환경으로 가두리 양식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잠재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거리 부족등으로 지역활력 회복에 한계가 높아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함.
3. 사업위치: 여수시 삼산면 유촌, 죽촌마을 일원(유촌항, 죽촌항)
4.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5. 사 업 비: 8,057백만원(국비 5,640, 지방비 2,417)

6. 사업내용

구분	시행계획(당초) (2025.2.27.)	시행계획(변경) (2025.12.26)	비고
공통 사업	- 선착장 군열 보수 및 폐기물 처리 - 대합실 조성 - 죽촌항 북방파제 확폭 - 유촌항 아산전조수리장 조성	- 안양기설치사업추가	
특화 사업	- 마을잔입로 정비 및 마을경관 개선 - 유촌 한마음센터 신축 - 죽촌 활력센터 리모델링 - (한)유촌마을 화관 보수 - (한)죽촌마을 화관 보수 - 동도해안공원 조성 - 어업인 안전센터 신축 - 귀어인 하우스 리모델링	-	
S/W 사업	- 역당강화 - 지역협약체 운영 등	-	
기타	- 위탁비(수수료) - 설계비 등	-	

※ 세부내역: 불임 참조

7. 사업시행자: 여수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8. 기타사항

- 관련 서류는 여수시청 섬발전지원과(☎ 061-659-2287)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061-740-1139)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시행계획 세부내역

구분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증·(△)감		변경 사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사업량	사업비	
① 지방사업	기항지 개선	계류시설	선착장균열보수및폐기물 처리	1식	1식	461.0	461.0	-	-	-
		건축물	동도대합실	72㎡	72㎡	524.7	562.7	-	38.0	레미콘 사급자재 변경
	안전한어업환경 조성	방파제확폭	죽촌방파제확폭	130.8m	130.8m	1,454.0	1,389.6	-	△64.4	공통사업 보험료 등 정산
		어선수리장 (선양장)	어선건조수리장	588㎡	588㎡	701.0	701.0	-	-	-
			인양기설치	-	20ton	-	78.0	20ton	78.0	지역협의체 의견 수렴하여 추가사업 실시
	① 소 계					3,140.7	3,192.3		51.6	
② 특화사업	동도 특화 경관 조성	경관개선	마을진입로 정비 및 경관개선	1식	1식	320.4	264.3	-	△56.1	특화사업 보험료 등 정산
	마을 정주 여건 개선	건축물	유촌한마음센터 신축	94㎡	94㎡	704.2	781.2	-	77.0	현장여건에 따른 지역협의체 요구사항 반영
		건축물	죽촌활력센터 리모델링	118㎡	118㎡	269.9	251.1	-	△18.8	특화사업 보험료 등 정산
		건축물	(현)유촌마을회관 보수	207㎡	207㎡	371.8	452.8	-	81.0	현장여건에 따른 지역협의체 요구사항 반영
		건축물	(현)죽촌마을회관 보수	103㎡	103㎡	219.3	199.0	-	△20.3	특화사업 보험료 등 정산
	동도 해안 쉼터 조성	관광레저	동도해안공원 조성	1식	1식	244.2	202.5	-	△41.7	특화사업 보험료 등 정산
		건축물	어업인 안전쉼터 신축	85㎡	85㎡	507.4	557.4	-	50.0	레미콘 사급자재 변경
		건축물	귀어인하우스 리모델링	66㎡	66㎡	138.1	113.4	-	△24.7	특화사업 보험료 등 정산
	② 소 계					2,775.3	2,821.7		△46.4	
③ 기타	리빙랩			1식	1식	431.8	431.8	-	-	-
	지역역량강화사업			1식	1식	310.0	273.6	-	△36.4	낙찰차액 감조정
	기본계획수립비			1식	1식	250.0	250.0	-	-	-
	세부실시계획비			1식	1식	594.0	532.4	-	-61.6	낙찰차액 감조정
	위탁수수료			1식	1식	555.0	555.0	-	-	-
	③ 소 계					2,140.8	2,042.8	-	-	-
① + ② + ③ 합계 금액			1식		8,056.8	8,056.8	-	-	-	

공유수면 내 방치물 제거 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표류 및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폐목, 고무보트)로 인하여 미관 저해, 해양오염 발생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6년 1월 6일(화)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5. 12. 23. ~ 2026. 1. 6.
2.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및 제원 : 방치 폐기물(폐목, 고무보트)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 등(폐자재 및 그 밖의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해당 물건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 공유수면관리팀(☎061-659-3971)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여수시 공고 제2025-3792호			
무 단 방 치 물(폐목, 고무보트)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659 인근 공유수면		
물 건 제 원	폐목, 고무보트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12호
제거 예정일자	2026년 1월 6일 이후 (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위치도		현장사진	
위 방치물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안전, 미관 저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u>2026년 1월 6일(화)</u>까지 여수시 해양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해양정책과 061-659-3971)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 원상회복 공시송달 공고

우리 시 국동항 내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장애물(방치차량)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여 수 시 장

1. 공고내용: 어항구역 내 금지행위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2.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로 96-6(국동항 수변공원 주차장)
3. 원상회복 대상: 국동항 내 무단 적치물(방치 차량)
4. 공고기간: 2025. 12. 24. ~ 2026. 1. 7. (15일간)
5. 공고방법: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이 끝나면 위 내용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하며,

나. 기한 내에 무단적치물에 대한 원상회복(제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41조 및 『행정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제거 조치 및 그 소요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어항시설팀(061-659-3991)

공 시 송 달 대 상			
적치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로 96-6		
물건 명칭 및 내용	방치 차량		
어항관리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3800호
처리 예정일자	2026년 1월 7일 이후(공시송달 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원상회복(직권제거)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위 치 도			
현장 사진			

공 시 송 달 대 상			
적치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로 96-6		
물건 명칭 및 내용	방치 차량		
어항관리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3800호
처리 예정일자	2026년 1월 7일 이후(공시송달 공고 종료 이후)		
처리방법	원상회복(직권제거)		
위반내용	어촌·어항법 제45조 위반		
위 치 도			
현장 사진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신월동 188-12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5. 12. 22.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신월동 188-12번지
2. 도로면적 : 5m²
3. 도로길이 : 5m
4. 도 로 폭 : 3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20	5	
신월동	188-12	대	12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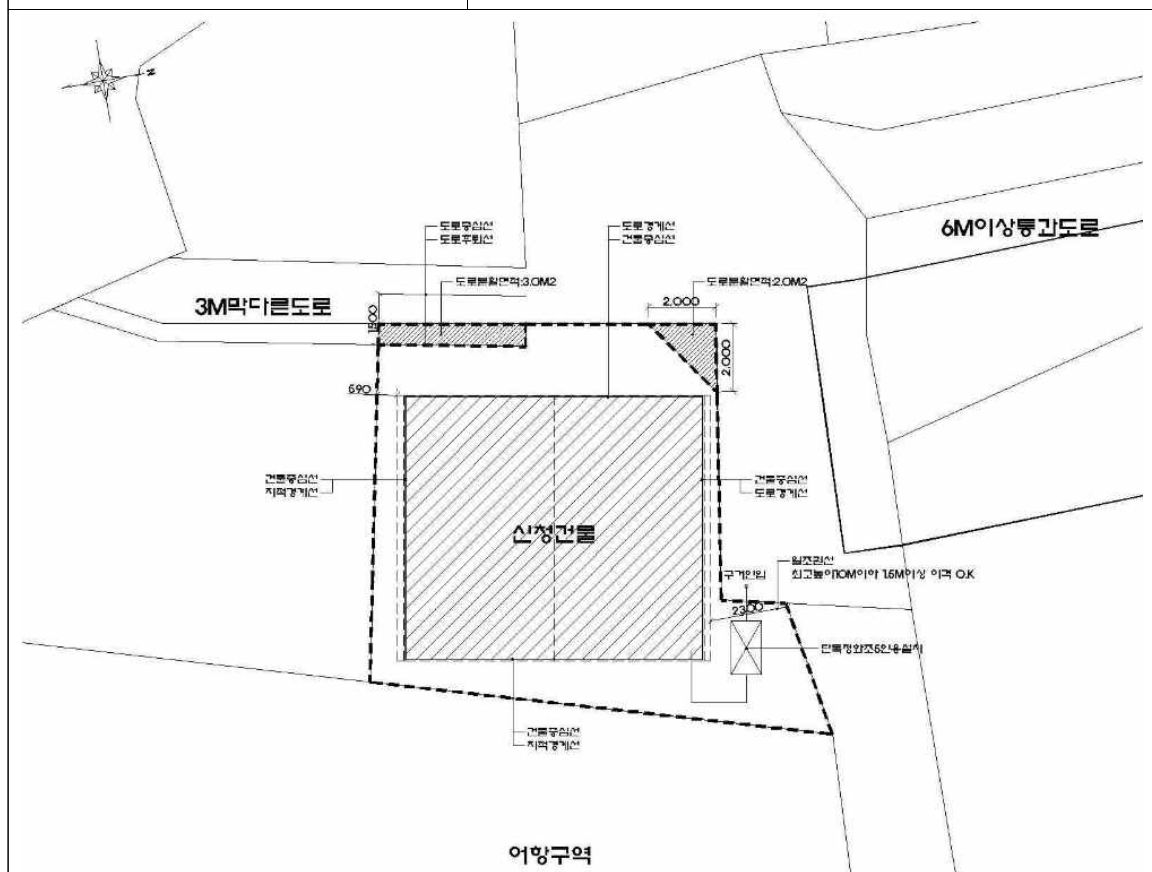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위 치 도



현 황 도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상호 및 대표자 : 현대컨테이너(주)(김애숙)
-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울촌면 울촌산단2로 241-10
- 3. 법 인 등록번호 : 206211-0053137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여수-25-다-10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025. 12. 23.

2025년 12월 23일

여 수 시 장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체납 조정금을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에게 납부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8명(돌산 율림 2, 돌산 신복 4, 돌산 우두 2)
2. 공고기간: 2025. 12. 23. ~ 2026. 1. 6.(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 및 해당 주민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다른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331, 34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불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5. 9. 10.

여 수 시 장

공시송달조서						
순번	성명	발송구분	취급구분	주소	발송일자	배달결과
1	조*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등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동 ****호 (부영예시랑)	2025-12-04	폐문부재(반송)
2	조*선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조정금 미납된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	등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180, ***동 ****호 (신평동, 신익강변타운1차)	2025-12-04	폐문부재(반송)

여수시 공고 제2025-3830호

2026년도 새기술 보급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제2차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여수시 새기술 보급 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제2차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여 수 시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3명

○ 응시번호 : 1 (김*관) 2 (김*미) 3 (노*열)

2 면접시험 시행계획

○ 일 시 : 2025. 12. 29.(월) 14:00 예정 * 일정 변동 시, 개별통보

○ 장 소 :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2층)

※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 당일 13:40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결정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중”이하 점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중”이하 점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인원을 최종합격자로 선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최종합격자발표

- 2025. 12. 30.(화) 예정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5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당일 면접시험 개시 2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등록하여야 함
- 지정된 시간 내에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팀
(☎ 061-659-44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5-383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00조·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동북아 LNG Hub 터미널 송출주배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사의 요청에 의해 발주자가 지정하여야 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여수시장

1. 근거법령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2. 모집분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아래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3. 참가자격 *아래자격을 모두 만족

-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 기관 중 ‘토목 또는 종합분야’ 등록업체
- 나.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 개인사업자는 관련서류상 사업장 소재)
-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점검)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2. 26.(금) 09:00 ~ 2026. 1. 23.(금) 17:00

-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전라남도 여수시청 신산업에너지과 수소산업팀(☎061-659-3891)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우편은 반드시 등기로 우송) 또는 방문접수

- 보내실 곳 : (우)59761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 4층 신산업에너지과 수소산업팀

5.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붙임 1)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붙임 2) 1부.

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1부.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일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2025. 12. 26.(금)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열린시정 - 고시공고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마감	2025. 12. 26.(금) 09:00 ~ 2026. 1. 23.(금) 17:00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59761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 여수시청 국동임시별관(4층) 신산업에너지과 수소산업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2026. 1. 26.(월) ~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열린시정 - 고시공고

※ 추진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집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출한 서류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부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나. 신청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명부 관리는 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이 도래하기 전에 재모집할 수 있습니다.

라. 모집공고에 응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작성·관리하며, 향후 안전점검 필요시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시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신산업에너지과 수소산업팀(☎061-659-38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끝.

[붙임 1]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토목분야 [] 건축분야 [] 종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기안·결재	→	등록결과 통보
--------	---	----	---	---------	---	-------	---	---------

신고인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3쪽 중 제1쪽)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전문분야(세부분야)			()			등록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 (대표자)			
소속 국가명						등록일			
사무실	소재지		(전화)			확보 구분			
	순사무실 면적		㎡			입주 연월일			
자본금 (필요시)	납입자본금			변경 연월일			실질자본금		
	• 금액 • 외국인 투자율 • 외국인 투자금액								
장비 보유 현황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취득일	품명	규격	수량	처분일
상훈(필요시)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공적 내용		용역명(필요시)		비고	
제재									
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사유 및 기간		용역명(필요시)		비고	

기술인 현황					
등재 연월일	기술인 수			변경 내용	기록자
	계	특급	고급 이하		

기록 변경사항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24.

여수시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여수시 화정면 여자리 456-11번지 지선 공유수면	화정면 여자리(마파) 방파제 보강공사	477㎡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5. 12. 24. ~ 2025. 1. 13.(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5. 12. 24. ~ 2025. 1. 13.(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jonghyun94@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종현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한려동 공고 제2025 - 32호

한려동 3통장 모집 공고

「여수시 라·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한려동 통장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여 수 시 한 려 동 장

1. 모집대상 : 1명(주민등록지 주소가 3통 내)

2. 대상지역 : 한려동 3통

3. 신청서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 12. 29.(월) ~ 2026. 1. 16.(금) /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제외

○ 접 수 처 : 한려동 주민센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본인이 직접 제출)

가. 주민총회 개최 시

- 주민총회 회의록, 통장지원신청서 1부,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각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나. 주민총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 통장 추천서 1부(추천인 명부 주민 20인 이상 추천), 통장지원신청서 1부, 자필이력서(사진부착) 1부, 자기소개서 1부, 각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 * 대리서명은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한 서류만 인정

다. 기타 제출서류 : (공통)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포함), (해당자)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된 자원봉사 실적확인서(공고시작일 기준 3년이내), 공공기관 상훈(공고시작일 기준 5년 이내) 등

4. 자격요건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의 자격기준 해당자

-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 활동력이 강한 자
-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

《부적격자》: 제외 대상자

가.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통장의 임무

○ 통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 통장은 통을 대표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 사항 전달
-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6. 임명방법 :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적임자 임명

7. 기타사항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름(2025. 12. 29. 기준)

○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 내용 허위 판명 시 즉시 통장 임명을 취소

○ 기간 내에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재공고

○ 자세한 사항은 한려동 주민센터(☎ 061-659-1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공고사항 찾아보는 방법은 여수시 홈페이지
(www.yeosu.go.kr) 고시공고 클릭 후 한려동 통장 모집공고 내용 확인

【붙임 1】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한려동 제()통장				
성명 (한자)		생년월일	19 (연령 만 세)	성별	남 · 여
주소		거주기간	 ~ 현재(년) (해당 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 자택 :		전자우편	@	
직업					
최종학력	년	월	일	학력 및 주요 경력사항	비고
주요경력					
봉사활동실적 (1365 자원봉사포털 정식 발급 실적확인서)	단체명(직책)		활동기간		활동내용
			 ~ (년 월)		
			 ~ (년 월)		
			 ~ (년 월)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제한)에 따라 개인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 함					

상기 본인은 신청서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려동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여수시 한려동장 귀하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통장추천서(해당 주민 20명이상 추천 명부 포함), 각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해당자 제출서류] ① 1365 자원봉사포털 정식 발급 실적확인서(공고 시작일 기준 3년 이내)

② 통장경력증명서(해당 읍면동장 확인의뢰), ③ 상훈(표창장 등 사본, 공고 시작일 기준 5년이내)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대 상	여수시 한려동 통
성 명	
주 소	
성 장 과 정 (가족관계)	
성 격 (장 · 단점)	
통 장 지 원 동 기	
경 력 사 항	

작 성 자 :

(서명/인)

통 장 추 천 서

☐ 추천대상자

○ 추천직위 : 한려동 ____통장

○ 성 명 :

○ 주 소 : 여수시

상기자는 지역주민에게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여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 한려동 ____통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 통장 추천(동의)인 명부 1부.

20 년 월 일

한려동 ____통장 추천(동의)인 일동

여수시 한려동장 귀하

한려동 ____통장 추천(동의)인 명부

연번	주 소	성 명	서명(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한려동 ____통장 추천(동의)인 명부

연번	주 소	성 명	서명(인)	비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각 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통장 임명 후 통장 수행 능력 부족 및 주민과의 마찰 등 각종 불미스러운 사유로 인하여 동에서 임의해임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작성자 본인 : (서명/인)

여수시 한려동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통장 입후보자와 관련하여, 해당 적격사유 판명여부의 판단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자료를 한려동 주민센터에 제공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목적

- 응모자의 적격여부 판명 자료 활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확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통장 종료시점까지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장 후보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통장입후보자의 개인정보는 통장 선정을 위한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연락처 :

성 명 :

(서명)

여수시 규칙 제873호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규칙 제874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해 시 누리집 등에 일정기간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관리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할 보조사업자의 일정 배수로 관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일정 배수는 각 호에 따른다.

1. 1~4개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 2배수 심의 의뢰
2. 5개 이상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 1.5배수 심의 의뢰

3. 신청한 보조사업자가 위 호의 일정배수에 미달할 경우 : 신청자 전원
심의 의뢰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의한 선정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대체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예산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 지원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신청) ①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보조금 관리부서와 관리위원회 의견 등이 반영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최종 사업계획요약서
2. 최종 사업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4. 입금계좌(사업별 별도계정) 통장사본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시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조건) ①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 기준은 보조금 관리부서에서 내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자체부담 기준의 내부지침에는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자체부담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체부담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한다.

제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금 관리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점검표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단,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하여는 행사 당일 출장하여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감액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정산검사) ①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즉시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또는 교부조건 위반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조금의 반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2.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5.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6.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7.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8. 그 외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결과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 ○ ○			
통 계 목				지원근거	
사 업 비		천 원		당해사업 총사업비	시 비 천 원(%) 자부담 천 원(%)
단 체 연락처	주 소				
	전 화			휴대폰	
	FAX			E-mail	
	실무자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폰		

☐ 통 계 목 : _____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중 택 1)

☐ 지원근거 : _____

(운영비보조의 경우에만 운영비 지원이 명시된 법령조항 및 조문을 기재하고, 사업비보조의 경우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지원이 명시된 조항 및 조문을 기재)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직인)

여 수 시 장 귀하

붙 임 : 1.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계획서 3. 단체현황 등

사업계획요약서

◆ 전체 사업계획을 한장에 요약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등록기관		등 록 일			
	상근직원수	- 명	금년도 총예산 (단위 : 천 원)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 ○ ○				
	사 업 비 (단위 : 천 원)	계	지원신청액	자부담	자부담비율(%)	
	사업대상	○				
	사업효과	○				
사 업 내 용	○ ○ ○ ○ ○					
사 업 비 산출내역	○ ○ ○ ○ ○					
최근 공익활동 추진실적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기재 (신규 보조금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사진, 회의록 등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전 년 도 보조사업 실 적	사 업 명	○				
	사 업 비	천 원	보 조 금	천 원	자 부 담	천 원(%)
	사업효과	○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보조 종류 1) : ○ ○ ○ ○ ○ ○ ○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 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예산규모	총사업비	천 원	보 조 금	천 원	자 부 담	천 원
신청금액 (보조금) 의 세부내역 2)	사 업 비	천 원 (%)	○ 인건비 : 천 원 (%) ○ 홍보비 : 천 원 (%) ○ 임차비 : 천 원 (%)등 주요 비목 기입			
	단 체 운영비	천 원 (%)	○ 인건비 : 천 원 (%) ○ 공공요금 : 천 원 (%) ○ 수용비 : 천 원 (%) ○ 활동비 : 천 원 (%)등 주요 비목 기입			

1) 지방보조금 과목 7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2)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 사업계획

1. 신청 사업명 : (신규, 계속)

2. 사업목적

-
-

3. 사업 추진방법

-
-

4. 세부사업 추진계획 (구체적으로 기재, 아래사항은 예시임)

- 추진기간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 장 소 :
- 사업대상 :
- 선정방법 : 공모, 추천, 신청, ~ 등
- 사업내용

-
-
-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사회적 기여도
-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6. 사업비 집행계획(예시-1) 3)

(단위 : 천 원)

단 위 사업 명	재 원	지출비목	지출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814	
○○ 사업	자 부 담	소 계		464	
		인 건 비	○○안내 도우미	264	▪ 2명 × 44,000원 × 3일 = 264천 원
		홍 보 비	홍보 플래카드 제작	200	▪ 4장 × 50,000원 = 200천 원
					▪
					▪
					▪
					▪
	보 조 금	소 계		1,350	▪
		인 쇄 비	교육용 유인물 제작	800	▪ 500부 × 1,600원 = 800천 원
		운영수당	○○회의 참석수당	350	▪ 5명 × 70,000원 × 1회 = 350천 원
		물품구입	○○행사용 △△ 구입	200	▪ 20,000원 × 10개 = 200천 원

(예시-2) 운영비 보조사업

(단위 : 천 원)

단 위 사업명	재 원	지출비목	지 출 내 역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6,370	
○○ 사업	자 부 담	계		250	
		사무용품	복사용지 구입	250	▪ 25,000원 × 10회 = 250천 원
					▪
					▪
	보 조 금	계		16,120	
		인 건 비	사무국장 인건비	14,400	▪ 900,000원 × 12월 = 1,080 천 원
		공공요금	전기요금	240	▪ 20,000원 × 12월 = 240천 원
		공공요금	전화요금	1,200	▪ 100,000원 × 12월 = 1,200 천 원
		사무용품	프린터토너 구입	280	▪ 140,000원 × 2개 = 280천 원

< 작 성 요 령 >

-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 ③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⑤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 × 회(명, 부 등) = 000천 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7. 회원명단(임원/단원 포함)⁴⁾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비 고

※ 별지작성 가능

4)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대표자명	[한글]○○○ ([한자]○○○)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	
사무실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E-mail		
	F A X		홈페이지		
창립년월일			회 원 수	- 명	
설립형태	사단법인(√), 등록단체(√) → 해당 되는 곳에 √				
상근직원수	명(예:사무처장 0명, 총무 0명, 간사 0명)				
설립목적					
조 직 (임 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성별)	임 기	비 고
	회 장				
	부 회 장				
	총 무				
	간 사				
재정상태 (단위 : 만 원)	연 도 별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전 년 도				
	당해년도				
시군지회 현 황	○ 개 소 : ○○○○, ○○○○, ○○○○, ○○○○, ○○○○ ○ 총회원수 : - 명(여수시에 한함)				
내 년 도 사업추진 방 향 (또는 주요사업)	○ ○ ○				

※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총회 회의록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의견서

단 체 명					대 표 자			담당부서						
사 업 명						통 계 목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지원근거 (조 문)	반드시 실제 조문(내용)을 기입													
사 업 내 용					사전검토 시 검토사항									
. . .					•지원대상 단체 적정 여부 / •주민수혜도 및 파급효과 •시의 권장사업인지 여부 /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 여부 •정산검사 및 사업성과 평가결과 등 반영									
					적 요 (사업 및 품 명)		산 출 기 초(원)		신 청 액(천원)			실무부서 검토의견		
									계	자체부담	시비보조	조정액(천원)	사 유	
					계									
검토 항목 및 배점	검 토 항 목		배 점	검 토 내 용					평 점					
	계		100						0					
	시정시책과의 연계성		25	•시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인지 여부 ◦ 우수(25), 보통(20), 미흡(15)										
	파급효과 및 주민수혜도		25	•다수시민의 파급효과 및 수혜 여부 ◦ 우수(25), 보통(20), 미흡(15)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및 자기자금 부담정도		25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및 자기자본금 ◦ 확보 능력 : 우수(25), 보통(20), 미흡(15)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25	•사업계획 적정 여부 ◦ 우수(25), 보통(20), 미흡(15)										
	전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		±15	•보조사업 정산 평가결과 환산점수 기재 ◦ 전년도 사업실적이 있을 경우 가감점 적용										
최 근 지원액 (천 원)	Y-3년	Y-2년	Y-1년	Y-2년 성과평가 결과		조정액 (천 원)	계	자체부담	시비보조					
				미흡										
종합의견														

붙임 : 1.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신청서, 2.사업요약서, 3.사업계획서, 4.단체현황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 조 사 업 명 :

사 업 장 소 :

보조사업의 목적 :

보조사업의 내용 :

보 조 사 업 소 요 경 비

총 소요액 :	보조금 신청액 :	자기자본 부담액:	기타:
사업 수행 기간	0000. . . ~ 0000 . . . (개월간)		
사 업 계 획 서	별 첨		
기 타 시 장 이 정 하 는 사 항			

위와 같이「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0000년 월 일

신청자

단 체 명 :

대 표 자 :

예금계좌번호 :

여 수 시 장 귀하

붙 임 : 1. 최종 사업계획요약서, 2. 최종 사업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4. 입금계좌통장 사본 등

지방보조금 청구서

☐ 보조 사업명 :

☐ 보조사업자 주소 :

☐ 청 구 금 액 : 금 원(금 원)

☐ 청 구 자 :

☐ 계 좌 번 호 : 계좌번호, 예금주 및 은행명칭 기재

상기 금액을 ○ ○ ○ ○ ○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청구인(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0000년 0월

문 서 번 호 :

보조사업자 :

0000년도 여수시 일반회계에서『 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니 이면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액 : 일금 원(W)

내 역

○ 보조금 과목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교부신청액	교부결정액	금회송금액	비 고

여 수 시 장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교부 조건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조건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4.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변경, 경비의 배분, 사업의 중단, 인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6.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취소)한다.
7.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8.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 1통을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9. 보조금 집행은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집행 시 사업자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0만 원이상 지출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한다(간이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급서류에 첨부). 다만, 인건비성 경비는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다.
 - 사업비집행 관련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보조금전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증빙자료로 불인정
10. 보조금이 교부된 통장으로만 사업비를 집행을 해야 하며, 이를 미 이행 시,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취소)한다.
1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사업별 별도 계정을 설치·관리하여 이자발생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 법인일 경우 법인명, 비법인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개인은 개인명이 들어간 통장 개설
1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

드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 법인은 법인 명의,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 개인은 개인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 발급

13.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금과 자부담을 통장에 입금하여 사업집행 후 사업비 잔액 발생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반납

14.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 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15.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4.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16. 지방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17. 지방보조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8.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에게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상기 교부결정서의 내용은 사업 및 부서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 . . .

○○○단체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최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은 그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6호서식]

사 업 [행 사] 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일시/장소 :
- 참 석 : 000명(남00명, 여00명)
- 사 업 비 : 000천 원(보조 , 자담 , 기타)
- 주 최 :
- 내 용 :

☐ 현장 점검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고
종 합 평 점		100		
1. 행사홍보 (10점)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 게첨 적정여부	5		
	행사내용 홍보 여부(방송, 홈페이지, 리플릿 등)	5		
2. 행 사 장 준비사항 (30점)	안내요원, 안전요원 배치 등 사전 행사장 준비	10		
	편의시설(화장실 등) 준비 및 이용 편의성	10		
	행사장(무대, 시설물, 장비 등) 배치 적정여부	10		
3.시민참여도 (15점)	행사 참석 인원	10		
	참석자의 다양성(성별, 연령별 참여시민의 다양성)	5		
4. 행사운영 적 정 성 (30점)	행사의 원활한 진행	10		
	질서유지 사항 및 돌발상황 대응	10		
	프로그램 구성(창의성, 내용, 콘텐츠 구성 등)	10		
5. 행사개최 효 과 (15점)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지 여부	5		
	행사참여자 만족도	5		
	행사장 정리정돈 및 청결여부	5		

종 합 평 가(자체평가)	
잘된 점	○ ○ ○ ○
미흡한 점	○ ○ ○
종합의견 (개선방안 등)	○ ○ ○ ○ ○

붙임 : 현장 사진 각 1부

작성자	소속	직	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	팀장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과장	성명	(인)

※ 배점 기준(참고)

구 분 (점수)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 수 (89 ~ 80점)	보 통 (79 ~ 70점)	미 흡 (69 ~ 60점)	매우 미흡 (60점 미만)
내 용	항목별 고려사항에 있어 모든 사항이 실행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	항목별 고려사항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항이 실행되고, 일부 성과가 있는 경우	항목별 고려사항 중 일부만 실시된 경우	항목별 고려사항에 대해 원론적, 최소 범위 내에서 실행된 경우	항목별 고려사항에 대한 노력수행이 없는 경우

사 진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년 ○○사업 지방보조사업

실 적 보 고 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 원(보조금 , 자부담)

제출일 : ○○○○. . .

단체(법인)명 : (직인)

(대 표 자 : 서명)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I. 사업추진실적

1.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 . .		
사 업 비	총 천 원	보 조 금	천 원 (%)
		자 부 담	천 원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주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 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진실적	사유
월일	1. 2.	월일	1. 2.	당초 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나는경우 사유기재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3.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II.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반납할 금액임)

2. 단위사업별 보조금 집행현황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단위사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총액							
(A) ××× 세미나	7.10 14:00	소 계	6,980,000	소 계	3,550,000	(산출기초)	430,000
		현수막	2,500,000	현수막	2,300,000	230,000*10개	200,000
		자료집	3,400,000	자료집	3,200,000	8,000*400부	200,000
		교통비	1,080,000	참가자교통비	1,050,000	(2,000*500명) +(50,000*1명)	30,000
(B) ◇◇◇ 캠페인		소 계		소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3. 단위사업별 보조금 출납현황

○ 단위사업명 :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현금카드
								계좌입금
								현금카드
								현금카드
								카드결제
계								

4. 자부담 집행현황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단위사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총액							
(A) ××× 세미나	7.10 14:00	소 계	6,980,000	소 계	3,550,000	(산출기초)	430,000
		현수막	2,500,000	현수막	2,300,000	230,000*10개	200,000
		자료집	3,400,000	자료집	3,200,000	8,000*400부	200,000
		교통비	1,080,000	참가자교통비	1,050,000	(2,000*500명) +(50,000*1명)	30,000
(B) ◇◇◇ 캠페인		소 계		소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5.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 세미나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B) ◇◇◇ 캠페인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6.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당초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변경에 따른 승인여부 : 여수시 승인과 단체 자체변경 증빙서류(내부결재 문서 사본 등)로 구분 기재

※ 붙임서류

- ① 지출결의서(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 ② 영수증(원본 또는 담당자 원본 확인후 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1부
- ③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1부
- ④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지방보조금 및 자부담 별도작성)
- ⑤ 기타 사업별 필요한 증빙서류(현수막 사진, 행사사진 등)

[별지 제8호서식]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 근거 :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

☐ 검사일시 :

☐ 보조금교부 및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행사)명	사업(행사)비			집행(정산)액			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내용	수량	집행잔액	

※ 월별, 분기별 정산시 임의서식 사용 가능

☐ 정산서류 검사결과

· 예산집행의 적정 및 적합성 여부	· 당초계획(목적)대로 집행() · 당초계획(목적)대로 미집행()
· 자부담 예산집행 여부	· 계획대로 집행 () · 계획대로 미집행()
·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 ()
· 점검결과 종합의견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여부, 문제점 및 조치 계획 포함)	·

☐ 사업 효과

○

☐ 평가자 의견

○

※ 붙임 : 실적보고서 1부

위와 같이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작성자 : 소속 급 성명 (인)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여수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읍·면·동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과 애郷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읍·면·동민”이란 여수시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읍·면·동민의 날”이란 여수시 읍·면·동 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읍·면·동민의 날 지정) ① 읍·면·동민의 날은 각 읍·면·동에서 종전부터 운영하여 온 경우에는 그 날을 읍·면·동민의 날로 한다.

- ② 읍·면·동민의 날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읍·면·동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정한다.

제4조(행사) 읍·면·동민의 날에 개최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읍·면·동민의 날 기념식 또는 체육행사
2. 그 밖에 읍·면·동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동장은 읍·면·동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읍·면·동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된 읍·면·동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읍·면·동 사회단체 또는 체육 관련 협의회 등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제4조의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행사비 지원) 여수시장은 읍·면·동민의 날의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6조에 따른 행사비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읍·면·동민이 개최한 행사와 시장이 행사에 대하여 배정 또는 지원한 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사 및 경비로 본다.

여수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 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 아.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

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여수시에 소재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의 안전한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자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 및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돌봄노동자에게 노동·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
 6. 돌봄노동자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6개월 이상 돌봄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복수 근무지의 경우 각 노동시간을 합산한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등의 신청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지원 사업의 추진
3.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
4.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수시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입장료의 감면) 조직위원회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섬박람회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등) 조직위원회는 입장권을 대량 구입한 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과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원회가 청산사무를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입장료 감경 및 면제대상자의 범위

구분 (감면 범위)	대 상 자
입장료 면제	1. 여주시 섬주민* * 섬주민의 범위는 [별표2]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1인) 5. 75세 이상인 사람 6. 6세 이하 아동 7. 단체인솔자(1인), 여행사 가이드(2인), 기사(1인) 8.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인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장료 감경 (100분의 50 범위 내)	1. 여주시민 2.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자 3. 현역군경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미성년자가 포함된 다문화 가구 6. 전라남도민(전남사랑도민증 소지자 포함) 7. 자매도시 및 남해안남중권 도시 주민 8. 그 밖에 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장료 면제 및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여수시 섬주민 인정범위

읍면동	해당 섬	비고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추도, 여자도, 송여자도, 낭도, 둔병도, 조발도, 적금도	
남 면	금오도, 수향도, 안도, 대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륙도, 소륙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소경도, 야도, 대경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금죽도	

* 근거 : 여수시 섬주민 등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섬·벽지 지역

- ▶ 여수시 섬주민 등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1항
- “섬”이란 여수시 관내에 위치한 섬발전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 “섬주민”이란 섬에 주민등록을 한 후 30일이 지난 사람
 - 섬발전촉진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섬”이란 만조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념품 등 제공) (생략)	제11조(기념품 등 제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u>② 시 또는 조직위원회는 공모 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2조(입장료의 감면) 조직위원 회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대상자 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섬박람회 입장료를 면제하 거나 감경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3조(보상금 등) 조직위원회는 입장권을 대량 구입한 자에게 조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직위 원회의 규정에 따른다.</u>
<u>제12조 ~ 제14조</u> (생략)	<u>제14조 ~ 제16조</u> (현행 제12조부 터 제14조까지와 같음)